

「평창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일, 김광성 의원 발의
- 회부일자: 2024년 9월 5일 회부
- 상정일자: 제2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4년 9월 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광성 의원)

가. 제안이유

- 영농부산물 파쇄의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여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고, 농업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안 제5조)
- 파쇄지원단 운영(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 1부.

「평창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김광성 의원
- 제안일자 : 2024. 9. 2.
- 회부일자 : 2024. 9. 5.
- 상정일자 : 2024. 9. 5.

2. 제안이유

- 영농부산물 파쇄의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여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고, 농업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안 제5조)
- 파쇄지원단 운영(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산림보호법」 제34조에서는 누구든지 산림 또는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되며, 폐기물을 매립 및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여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고, 농업의 미세먼지 저감¹⁾에 기여하고자 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5조(지원사업)에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1) 환경부 국가 미세먼지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농업·농촌분야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1만4900톤으로 국가 전체 발생량의 17%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로는 생물성 연소(영농부산물 등)로 인한 것이 1만1500톤으로 대부분이다.

<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

1. 파쇄지원단 운영
2. 농업경영체 교육
3.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홍보
4. 그 밖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안 제8조(파쇄지원단 운영 등)에서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산림연접지나 고령농업인 거주지역을 우선 지원하도록 함.

5. 종합검토의견

- 산불 예방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자구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안은 입법 취지가 합당하고 자치사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도 없는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관계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붙임 2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국가정책



산림을
가꾸는
미래를
상상

소각산물 '영농부산물 파쇄'로 해결!

영농부산물 파쇄로 봄철 소각산물 줄이다.

1 영농부산물 파쇄 전년 대비 8배 확대



2 소각산물 10년 평균 대비 6% 감소



범부처 협업으로 영농부산물 파쇄를 확대하다.

1 범부처 총력대응



-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 파쇄 추진상황 점검 (행안부, 산림청, 농진청 등)

2 협업 기반 마련



- 산림-농림부서 권역별 합동 교육
-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3 영농부산물 파쇄 추진



- (농식품부) 파쇄기 보급 (662대)
- (산림청) 산불인력활용 파쇄지원 (약 1만명)
- (농진청) 전문 파쇄팀 운영 (139개 시·군)

4 적극적 홍보로 파쇄 공감대 확산



- 영농부산물 파쇄 캠페인 및 시연회
- 언론보도, 홍보 동영상 제작·배포

평창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07
----------	-----

발의연월일: 2024년 9월 2일

발 의 자: 김광성 의원

찬 성 자: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의원

1. 제안이유

- 가. '23년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중 약 22%가 논밭두렁 태우기·영농부산물 소각이 원인이었으며, '20년도 농촌지역 영농부산물 폐기물 소각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농부산물을 밭에서 모아서 소각한다는 비율이 64.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나. 본 조례는 영농부산물 파쇄의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여,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고,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지원을 통하여 농업 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 가. 안전처리 계획(안 제4조)
- 나. 지원사업(안 제5조)
- 다. 파쇄지원단 운영 등(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불임 참조(비용추계서 첨부)
- 다. 입법예고: 2024. 8. 6. ~ 2024. 8. 27.(21일간) 의견 없음
- 라. 집행기관의견수렴: 2024. 7. 17. ~ 2024. 7. 30.(14일간), 아래표 참조

평창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기술지원과) 검토 의견 제출

조례안(의회안)	검토안(기술지원과)	사유	의회 의견
<p>제4조(안전처리 계획) 군수는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창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 2.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3. 파쇄지원단 운영 4. 영농부산물의 다원적 활용 5. 그 밖에 군수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4조(안전처리 계획) 군수는</p> <p>-----</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 2.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3. 파쇄지원단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현재 영농부산물의 병충해 유무를 확인 수 없어 다원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위험한 요소가 많음(병해충 확산등) 영농부산물의 다원적 활용은 삭제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p>	<p>○ 모두 수용</p> <p><u>제4조제4호. 영농부산물의 다원적 활용 삭제</u></p> <p><u>제5조제2호. 영농부산물 퇴비화사업 삭제</u></p> <p>○ 제4조와 제5조 조문 수정에 따라 <u>제1조와 제3조 조문 수정</u></p> <p>[기존 안] 제1조(목적)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며, 퇴비화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파쇄지원단 운영 2. 영농부산물 퇴비화 사업 3. 농업경영체 교육 4.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홍보 5. 그 밖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제5조(지원사업) 군수는</p> <p>-----</p> <p>-----</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파쇄지원단 운영 2. 농업경영체 교육 3.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홍보 4. 그 밖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병해충이 발생한 영농부산물을 사용한 퇴비의 경우 오히려 병해충 방제가 아닌 확산이 우려됨으로 영농부산물 퇴비화 사업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현재 영농부산물 파쇄에 따른 병해충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파쇄 작업전 파쇄기를 소독하고 작업을 시행중임.)</p>	<p><u>통하여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변경 안] 제1조(목적)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기존 안] 제3조(군수의 책무)-- 산불예방 및 <u>환경친화적 농업 발전을 위하여</u> --</p> <p>[변경 안] 제3조(군수의 책무)--- 산불예방 및 <u>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하여</u> ---</p>

평창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줄기, 가지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
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안전하게 파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불예방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처리 계획) 군수는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창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
2.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3. 파쇄지원단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파쇄지원단 운영

2. 농업경영체 교육

3.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홍보

4. 그 밖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파쇄지원단 운영 등) ① 군수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파쇄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파쇄지원단은 산림연접지나 고령 농업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영농부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산림보호법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리는 행위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 라.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사. 자연보호활동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지원사업 및 파쇄지원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유류비등
나. 관련조문: 조례안 제5조(지원사업) 및 제6조(파쇄지원단 운영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나. 추계 결과

내역	산출기초	예산액 (천원)	비고
합계		105,130	국비 42,052 군비 63,078
인건비	파쇄운영지원단 보수 2,300천원×6명×5개월 (23년최저임금적용 9,620원×8시간×1개월)	69,000	국비 27,600 군비 41,400
일반운영비	유류비 및 기타 임대비(차량등)	31,120	국비 12,448 군비 18,672
	-유류비 1,600원×22L/일×파쇄기4대×5개월	21,120	
	-기타임대비(차량등) 1,000천원×2대×5개월	10,000	
	안전용품등 잡비 167천원×6명×5개월	5,010	국비 2,004 군비 3,006

다. 재원조달 방안

-국비 보조 및 자체재원(2024년 당초예산 편성)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과장 윤병구
연락처	(033) 330 - 1304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105,130	105,130	105,130	105,130	105,130	525,650
	파쇄지원단 인건비	69,000	69,000	69,000	69,000	69,000	345,000
	유류비 및 기타 임대비(차량등)	31,120	31,120	31,120	31,120	31,120	155,600
	안전용품등 잡비	5,010	5,010	5,010	5,010	5,010	25,050
재원 조달		105,130	105,130	105,130	105,130	105,130	525,650
의존 재원	소 계	42,052	42,052	42,052	42,052	42,052	210,260
	보조금	42,052	42,052	42,052	42,052	42,052	210,26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63,078	63,078	63,078	63,078	63,078	315,390
	지방세						
	세외수입						
	군비	63,078	63,078	63,078	63,078	63,078	315,39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